

사. 산업융합을 통한 연구개발 등에 대한 지원(안 제24조제1항)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중소기업자 등이 산업융합을 통한 연구개발이나 그에 따른 연구 성과의 사업화를 추진하는 때에 그에 드는 비용을 출연 또는 보조하거나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함.

아. 산업융합지원센터의 지정(안 제26조제1항)

지식경제부장관은 산업융합의 촉진과 융합 신산업의 발전을 효율적으로 지원하기 위하여 전문인력 등을 갖춘 기관 또는 법인을 산업융합지원센터로 지정할 수 있도록 함.

자. 산업융합 특성화대학 등의 지정(안 제28조)

정부는 산업융합에 필요한 전문인력을 양성하기 위하여 산업융합 특성화대학, 산업융합 특성화대학원 또는 산업융합 특성화대학부설연구소를 지정할 수 있도록 함. <법제처 제공>

국회에서 의결된 자연공원법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 통 령 이 명 박 인

2011년 4월 5일

국무총리 김 황 식

국무위원

이 만 의

환경부장관

●**법률 제10548호**

자연공원법 일부개정법률

자연공원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7조의3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7조의3(전통사찰의 의견수렴) 공원관리청이 「전통사찰의 보존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에 따른 경내지를 대상으로 제12조부터 제14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공원계획의 결정, 제15조에 따른 공원계획의 변경 또는 제17조의2에 따른 공원별 보전·관리계획을 수립하는 경우에는 미리 해당 전통사찰 주지의 의견을 수렴하여야 한다.

제18조제1항제3호를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항 제4호 및 제5호를 각각 삭제하며, 같은 항에 제6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 3. 공원마을지구: 마을이 형성된 지역으로서 주민생활을 유지하는 데에 필요한 지역
- 6. 공원문화유산지구: 「문화재보호법」 제2조제2항에 따른 지정문화재를 보유한 사찰(寺刹)과 「전통사찰의 보존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전통사찰의 경내지 중 문화재의 보전에 필요하거나 불사(佛事)에 필요한 시설을 설치하고자 하는 지역

제18조제2항제2호나목 중 “밀집하지 아니하는 공원시설”을 “공원시설”로 하고, 같은 항 제3호 각 목 외의 부분을 다음과 같이 한다.

공원마을지구

제18조제2항제3호다목 및 라목 중 “공원자연마을지구”를 각각 “공원마을지구”로 하고, 같은 항 제4호 및 제5호를 각각 삭제하며, 같은 항에 제6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6. 공원문화유산지구

가. 공원자연환경지구에서 허용되는 행위

나. 불교의 의식(儀式), 승려의 수행 및 생활과 신도의 교화를 위하여 설치하는 시설 및 그 부대시설의 신축·증축·개축·재축 및 이축 행위

다. 그 밖의 행위로서 사찰의 보전·관리를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행위

제18조제3항을 삭제하고, 같은 조 제5항 중 “공원자연마을지구”를 “공원마을지구”로 한다.

제20조제3항 단서 중 “공원집단시설지구”를 “공원마을지구”로 한다.

제21조제8호를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조에 제13호 및 제14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8.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9조제5항, 제36조제1항·제4항에 따른 입목벌채 등의 허가·신고

13. 「산림보호법」 제9조제2항에 따른 입목·죽의 벌채 등의 허가·신고

14. 「농어촌정비법」 제23조에 따른 농업생산기반시설의 목적 외 사용의 승인

제23조의2 본문 중 “삭도”를 “궤도”로 한다.

제28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지역을 지정하여 일정 기간 사람의 출입 또는 차량의 통행을 제한하거나 금지할 수 있다”를 “지역을 자연공원특별보호구역 또는 임시출입통제구역으로 지정하여 일정 기간 사람의 출입 또는 차량의 통행을 금지하거나 탐방객 수를 제한할 수 있다”로 하고, 같은 조 제2항을 제3항으로 하며,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 공원관리청은 제1항에 따라 지정한 자연공원특별보호구역에서 멸종위기종의 복원, 외래 동식물의 제거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제28조제3항(중전의 제2항) 중 “통행을 제한하거나 금지하려는 경우”를 “통행을 금지하거나 탐방객 수를 제한하려는 경우”로 한다.

제37조제2항 및 제3항을 각각 제3항 및 제4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 제18조제1항제6호에 따른 사찰의 주지는 공원관리청과 협의하여 공원문화유산지구에 입장하는 사람에게 입장료를 징수할 수 있다. 이 경우 입장료를 징수하는 사찰은 「문화재보호법」 제49조에 따른 관람료를 징수할 수 없다.

제37조제4항(중전의 제3항) 중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을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으로 한다.

제42조제1항 단서 중 “제37조제2항”을 “제37조제2항 또는 제3항”으로, “사용료는”을 “입장료 또는 사용료는 각각”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제37조제2항에 따른 수입은 공원문화유산지구의 유지·관리를 위한 비용으로 사용하여야 한다.

제43조 중 “지방자치단체와 제20조에 따라 국립공원의 공원사업을 하거나 공원시설을 관리하는 자에게 국립공원에 관한”을 “다음 각 호의”로 하고, 같은 조에 제1호부터 제3호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 지방자치단체의 자연공원에 관한 비용
2. 제18조제1항제6호에 따른 사찰의 환경개선에 관한 비용
3. 제20조에 따라 국립공원의 공원사업을 하거나 공원시설을 관리하는 자의 공원사업 및 공원시설 관리에 관한 비용

제44조제3호부터 제6호까지를 각각 제4호부터 제7호까지로 하고, 같은 조에 제3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3. 국립공원의 야생 동식물 보호 및 멸종위기종의 복원

제50조제1항 중 “10명”을 “14명”으로 한다.

제71조제1항 중 “공공기관의 장”을 “공공기관의 장(이하 이 조에서 “사업시행기관”이라 한다)”으로 하고, 같은 항에 후단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이 경우 사업시행기관은 사업대상지역에 「전통사찰의 보존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에 따른 경내지가 포함되는 경우에는 공원관리청과 협의에 앞서 해당 전통사찰의 주지와 협의하여야 한다.

제71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중 “행위”를 “행위와 제18조제2항제6호가목 및 나목의 행위”로, “본다”를 “본다. 이 경우 제18조제1항제6호에 따른 공원문화유산지구에서 허가 또는 인가 등을 하려는 행정기관의 장은 허가 또는 인가 등에 관한 신청서 사본을 지체 없이 공원관리청에 보내야 하며, 공원관리청은 그 신청내용대로 허가 또는 인가 등을 할 경우 자연공원의 유지·관리에 상당한 지장을 줄 우려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보완의견을 행정기관의 장에게 제시할 수 있다”로 한다.

제73조의2제2항 중 “공원자연마을지구”를 “공원마을지구”로 한다.

제73조의3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73조의3(생태체험사업) ① 공원관리청은 국민이 자연공원을 건전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생태체험사

업을 시행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생태체험사업은 자연공원의 경관과 생태 환경을 훼손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시행하여야 하며, 구체적인 범위·종류 및 비용 징수 등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③ 공원관리청은 제1항에 따라 생태체험사업을 시행하는 경우에는 그 내용을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공개하여야 한다.

제81조제1항 중 “자원조사 등”을 “자원조사 및 그 밖에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사업”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을 제4항으로 하며, 같은 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③ 환경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협회가 수행하는 사업에 대하여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자연공원의 용도지구 변경에 관한 경과조치) ①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공원계획으로 결정된 공원자연마을지구·공원밀집마을지구 및 공원집단시설지구는 제18조의 개정규정에 따른 공원마을지구로 본다.

② 제1항에 따라 공원마을지구로 보는 용도지구 중 종전의 규정에 따라 공원계획으로 결정된 공원밀집마을지구 및 공원집단시설지구에서 허용되는 행위의 기준은 각각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3조(다른 법률의 개정)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연번 168을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표 연번 169 및 170을 각각 삭제하며, 같은 표에 연번 170의 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68	「자연공원법」 제18조제1항제3호	공원마을지구
170의2	「자연공원법」 제18조제1항제6호	공원문화유산지구

◇개정이유

자연공원의 보전·관리를 강화하고 자연공원 내 대표적인 문화유산인 지정문화재를 보유한 사찰 및 전통사찰의 발전에 기여하기 위하여 자연공원의 5개 용도지구 중 공원밀집마을지구 및 공원집단시설지구를 폐지하고 공원문화유산지구를 신설함으로써 4개의 용도지구로 개편하고, 훼손된 자연공원을 친환경적으로 복원·관리하기 위하여 종전의 출입 또는 통행 제한·금지지역을 자연공원특별보호구역 또는 임시출입통제구역으로 지정하여 생태계 복원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할 수 있도록 하며, 국가는 사찰의 환경개선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할 수 있도록 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과정에서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 가. 공원관리청이 전통사찰의 경내지(境內地)를 대상으로 공원계획의 결정·변경, 공원별 보전·관리계획의 수립 등을 하려는 경우 및 국가·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이 시행하는 사업에 경내지가 포함되는 경우에는 해당 사찰 주지의 의견을 수렴하도록 함(안 제17조의3 및 제71조제1항 후단 신설).
- 나. 자연공원의 보전과 관리를 강화하고 지정문화재를 보유한 사찰과 전통사찰의 발전에 기여하기 위하여 공원자연보존지구, 공원자연환경지구, 공원자연마을지구, 공원밀집마을지구 및 공원집단시설지구 등의 5개 용도지구로 구분되던 자연공원구역을 공원자연보존지구, 공원자연환경지구, 공원마을지구 및 공원문화유산지구의 4개 용도지구로 개편함(안 제18조제1항).
- 다. 지정문화재를 보유한 사찰과 전통사찰의 경내지 중 문화재 보전에 필요하거나 불사(佛事)에 필요한 시설을 설치하고자 하는 지역을 공원문화유산지구로 지정하도록 하고, 공원문화유산지구에서는 불교의 의식(儀式), 승려의 수행·생활과 신도의 교화를 위한 시설 및 그 부대시설의 신축·증축·개축·이축 행위를 할 수 있도록 함(안 제18조제1항).
- 라. 자연공원의 보호와 훼손된 자연의 회복 등을 위하여 소극적으로 공원구역에 대한 사람의 출입 또는 차량의 통행을 제한하는 현행 제도를 개선할 필요가 있으므로, 자연공원을 보다 효율적으로 관리하고 훼손된 자연의 복원사업을 효과적으로 추진할 수 있도록 자연공원특별보호구역 또는 임시출입통제구역을 지정하여 멸종위기종의 복원, 외래 동식물의 제거 등의 사업도 추진할 수 있도록 개선함(안 제28조).
- 마. 공원문화유산지구 내 문화재사찰 또는 전통사찰의 주지는 공원관리청과 협의하여 공원문화유산 지구에 입장하는 자로부터 입장료를 징수할 수 있으며, 동 입장료는 공원문화유산지구의 유지·관리비용으로 사용하도록 함(안 제37조제2항 및 제42조제2항 단서 신설).
- 바. 국가는 예산의 범위에서 제18조제1항제6호에 따른 공원문화유산 지구에 있는 사찰의 환경개선 에 관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할 수 있도록 함(안 제43조).
- 사. 공원문화유산지구에서 허용되는 행위에 관하여는 관계 행정기관의 장의 허가를 받은 경우에는 이 법에 따라 공원관리청의 허가를 받은 것으로 보도록 함(안 제71조제2항).
- 아. 공원관리청이 자연공원의 경관과 생태적 환경을 훼손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생태체험사업을 시행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국민이 자연공원을 건전하게 이용하고 생태체험을 통하여 자연생태계 보전에 대한 국민의 관심과 의식을 높이고자 함(안 제73조의3 신설). <법제처 제공>

국회에서 의결된 전기·전자제품 및 자동차의 자원순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이명박 인

2011년 4월 5일

국무총리 김항식

국무위원

환경부장관

이만의

●법률 제10549호

전기·전자제품 및 자동차의 자원순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